

강원도

주의, 통보

제 목 징계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119구조대(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제28조 제3항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소속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동안 수사결과 통보 등의 사유로 총 5건의 징계사건을 처리하였다.

2. 지적사항

가. 징계심의 대상자 출석 통지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1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석 통지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출석통지는 징계등 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함.(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096. 판결)” 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제작한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 107쪽에는 출석 통지서 송부규정은 징계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이므로 반드시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출석 통지서 교부일 예시로 11월 11일 징계위원회 개최시 11월 7일까지 출석 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출석 통지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징계등 처분이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거나 징계등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으로써 재징계 절차를 밟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 통지서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정의 출석 통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통지할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별지 3호서식] 출석 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방어에 필요한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1일 전 또는 2일 전에 도달하도록 한 사실이 2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못하였고,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될 우려가 있었다. 다만, 각 징계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정상 출석하여 자기방어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후 절차 하자를 문제삼아 소청심사 등 구제절차를 청구하지 않아 원처분이 확정되었다.

나. 징계업무 운영 서식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8. 4. 24.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이 제정된 이래 총 26회 개정되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2008. 5. 2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이 제정되어 총 15회 개정되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최신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징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 징계업무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비위유형, 징계부가금, 감경공적, 평소소행 등을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확인서(「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송부하는 출석 통지서가 법령 개정에 따라 서식이 변경되었음에도 개정되기 전 서식을 사용하였고,

또한, 투표용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타 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표용지에 관한 문구 및 서식을 삭제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이 의결서를 통해 징계 의결을 하도록 2018. 7. 1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규정에서 없어진 투표용지 서식을 계속으로 사용하였다.

다. 징계의결 시 혐의를 증명하는 자료제공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징계 의결 요구서, 확인서,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심의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 제4조에 따르면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는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등에 따라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징계심의 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는 0000. 00. 00. 음주운전으로 인해 0000. 0. 0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결정을 받은 소방○ ○○○에 대하여 0000. 0. 0.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음주운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징계심의 대상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징계심의 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주장하고자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징계령」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소명하도록 하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징계 혐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와는 관련 없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정상참작 자료(업무실적, 기부활동, 언론 홍보실적 등)을 비중있게 첨부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징계양정이 결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119구조대 소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0년 0월) ○○소방서 ○○○○과에서 징계업무 실무를 담당하면서 0000. 0.경 소방○ ○○○, 0000. 0.경 소방○ ○○○의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소정의 출석 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방○ ○○○에게는 1일전, 소방○ ○○○에게는 2일전 출석 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였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확인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송부하는 출석 통지서를 법령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였으며, 징계양정규칙이 개정되어 삭제된 투표용지를 징계업무에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징계업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될 우려가 있었고,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징계양정 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

○○소방서 ○○○○과 소방○ ○○○는 0000. 0. 00.부터 현재까지(0년 0월) 징계업무 실무를 담당하면서 0000. 0경 소방○ ○○○, 0000. 0.경 소방○ ○○○, 0000. 0.경 소방○ ○○○의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확인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송부하는 출석 통지서를 법령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였고, 소방○ ○○○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시 음주운전 징계양정 결정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징계혐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와는 관련 없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정상참작 자료를 비중있게 첨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징계의결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징계양정 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하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주의, 시정(회수·추급)

제 목 휴가사용,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각 과 및 안전센터

관 련 자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②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0.10.20.)」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나)’에 따르면 원격지간(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청 소방정책과-2237(2019. 4. 4., 소방직무관련 자격인증 시험 응시관련 복무처리 방안 알림)호에 따르면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소방청에서 정책적으로 자격·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시험, 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 실시하거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시험, 현장 소방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시험의 경우는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으로 처리하고,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자기개발의 성격이 강한 자격 시험의 경우 연가로 처리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다.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2021.1.20.)」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용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장의 경우 출장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인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거나,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등 복무관리현황을 확인한바 총 7명이 인사발령, 근무조 변경, 교육입교 등 공가 사유가 아님에도 부적정하게 공가를 사용하였다.

나. 복무관리시스템(e사람) 근무상황신청 시 휴가구분 적용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에서 휴가 종류별 사용 방법·일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 4. 1.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후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1. 7.경부터 인사혁신처 표준인사 관리시스템(e사람)으로 복무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가를 신청할 경우 근무상황 종별²⁾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소방서 휴가 등 근무상황 내역을 확인한바 ○○119안전센터 소방○ ○○○가 0000. 00. 0. 가사정리, 0000. 00. 0. 자녀입원을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e사람 시스템 휴가종별 입력 시 ‘연가’로 입력하여야 함에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가일수 공제 없이 연가 4일을 초과 사용하였고,

‘기타’로 입력 하여 근무상황을 신청할 경우 “ ‘기타’ 종별의 사용일수는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휴가목적으로 악용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경고문구가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상황을 신청하였다.

다. 가족돌봄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2) 근무상황 종별

종별		세부선택	연가일수 공제여부
연가	연가		공제
	반일연가	오전, 오후	공제
지각, 외출, 조퇴		연가처리	공제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유·무), 공무상병가	미공제
병가	일반병가	진단서미첨부	6일초과시 공제
		진단서첨부, 병가(30일 이상)	미공제
	공무상병가	공무상병가	미공제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당직휴무			미공제
결근			공제
기타	관외여행		미공제
	기타		미공제

* 자료: e사람 시스템 발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020.10.20.)」 제20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연간 특별휴가 사용일수(10일 범위), 특별휴가에 따른 급여 유·무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인 경우 급여에서 사용일 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 ○○○이 배우자 간병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휴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채 지급하였고, 소방○ ○○○의 경우 자녀졸업식 참석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자녀가 3명이므로 연간 3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

라.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사용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하며, 아래 각 목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건강검진에 공가를 사용할 때에는 건강검진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소방서 ○○○○과 근무 당시 0000. 0. 00. 코로나접종을 위해 공가를 승인받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0000. 0. 0. 또다시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사용하였다.

마. 연가가산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

3)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4)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⁵⁾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휴직, 신규임용 등으로 당해연도 비 근무기간이 포함된 대상 26명이 다음 연도 연가미사용 또는 병가미사용 사유로 연가를 가산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는 0000. 00. 0. 가사정리, 0000. 00. 0. 자녀입원을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당해연도 잔여 연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당겨쓰기 하거나 가족돌봄 특별휴가(연간 10일 범

5)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위 내)를 무급(자녀가 1명일 경우 2일까지 유급)으로 승인받아 급여에서 공제 되도록 하여야 했으나 복무관리시스템(e사람) 휴가종별을 ‘기타’로 입력하여 연간 연가일수 공제 없이 연가 4일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기타’로 근무상황을 신청할 경우 “ ‘기타’ 종별의 사용일수는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휴가목적으로 악용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경고문구가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상황을 신청하였다.

○○소방서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과에 근무할 당시 0000. 0. 00. 코로나접종을 사유로 공가를 승인받아 같은 날 건강검진을 하였으나, 0000. 0. 0. 또다시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또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하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추급)] 휴가·연가가산 등 복무관리가 잘못되어 36명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 및 수당 2,369,960원을 회수하시고, 1명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수당 148,880원을 추가 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주의, 통보

제 목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청사 신·증축,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법률)」 제41조,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7조에 따르면 경상적 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6조 관련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고, 그 예시로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소규모적인 수선비, 임차료 등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는 소방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착용방법,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소방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소방공무원 피복을 지급할 경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수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의 계약집행현황을 확인한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기 부적정한 방한장갑을 구입하여 전직원에게 지급하였고, 집행과목 또한 기본행정 사무용품

등을 집행하기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의 목적과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나. 계약서류 작성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계약법(법률)」 제4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1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별지 37호, 38호, 39호, 40호, 41호]서식으로 계약·지출의 종류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계약 관련 첨부 서류, 별지 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 대금지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편철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 ○○소방서 계약집행서류를 확인한 결과 0000. 00. 의무소방원 동계 체력단련용 피복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결의문서를 0000. 12. 21. 최종승인을 받았음에도 결재일 이전인 0000. 12. 17.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초 견적금액 8,362,000원에서 수의시담을 통해 5%

절감한 7,944,000원으로 최종 계약하였으나 계약 관련 서류(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지역개발채권매입영수증, 세금계산서)는 수의시담 전 금액인 8,362,000원으로 작성하는 등 계약서류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다.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미확인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강원도조례, 2023. 2. 24.일부개정 이전)」 제5호 및 [별표 1]에서는 백만원 이상 계약체결 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청구액의 2.5%,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청구액의 1.5%를 강원도 지역개발 채권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별표 2]에서는 국가기관 등 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 또는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계약체결 또는 대금지급 시 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고, 매입의무 면제기관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확인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현황을 확인한바 총 3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체결 후 대금을 지출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는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0년 0월) ○○소방서 ○○○○과에서 계약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계약결의 문서를 0000. 12. 21. 최종 승인받았음에도 결재일 이전인 0000. 12. 17.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최초 견적금액 8,362,000원에서 수의시담을 통해 5% 절감한 7,944,00원으로 최종 계약하였으나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하자보증각서, 지역개발채권매일영수증, 세금계산서)는 수의시담 전 금액인 8,362,000원으로 작성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하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시정(회수)

제 목 특정업무경비, 급량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특정업무경비 지출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6)” 에 의하면,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6)

(단위: 원)

특정업무경비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 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3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별표2”, “5-2. 특정업무경비(204-03)”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 동안 휴직, 휴가, 교육입교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 13명에게 방호활동비 1,470,840원, 구조구급활동비 108,08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나. 급량비 지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식비를 지급할 경우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자 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0000.00.~현재)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2명에게 관외출장에 따른 식비 20,000원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야근 매식비 16,000원을 중복 지급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휴가, 휴직, 장기교육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방호활동비 및 구조구급활동비 1,578,920원과 관외출장여비와 중복지급된 급량비 16,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시정, 통보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각119안전센터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해임 등에 관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다.

[표1]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합계	-	46	1,010	897	9,89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처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 제24조, 제26조 및 50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14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서장은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할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간 확인, 선임연기 및 선임유예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입건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0000. 0. 00. ~ 0. 00.)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을 초과하여 선임신고 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5건 확인되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중 미발급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⁸⁾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

8)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의 업무 중 3번과 4번 업무만 대행 가능(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참고)

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14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했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0000. 0. 00. ~ 0. 00.)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한 32건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2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5호, 시행 2022. 12. 1.]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⁹⁾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 제283호, 시행 2022. 12. 1.]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

9)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3)·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0000.0.00. ~ 0.00.) 중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 2개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 2개소 총 4개소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업무처리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업무를 소홀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업무는 즉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 관할 119 안전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실태 관리는 ○○○○팀에서 맡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건축물) 사용승인 통보를 받으면 관할 센터에 사용승인 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나 그 후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할 때 즉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선임신고 태만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나, 이에 대한 추적관리를 태만히 하여 금 번 감사에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선임 신고일이 14일을 경과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변동사항을 현행화 하고, 119안전센터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현행화 및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선임, 유자격자 선임, 년 1회 이상 실무교육 이수여부를 소방안전원에 확인하고, 각 공공기관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다.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별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연하여 선임신고한 ○○○○, (주)○○○○○○, ○○건물, 재단법인 ○○○○, ○○○○○○○○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②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2개소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2개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자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시정(회수)

제 목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시행 2021. 6. 9.]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표1]과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남성대		지역대		여성대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2022년	25	609	11	309	3	55	11	245
2021년	25	566	11	278	3	54	11	234
2020년	24	573	11	286	2	35	11	252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시행 2021. 6. 9.]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시행 2022. 12. 1.]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강원도조례 제4473호, 시행 2019. 11. 8.]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업무 등 제7조10)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여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0000. 0. 00. ~ 0. 00.) 중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1건 98명의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

-
- 10)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1,296,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경고, 주의, 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②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③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강원도 규칙 제3261호, 시행 2022. 12. 30.] 제35조 제4항에 따라 [표1] 과 같이 총 1,277 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상식	지하식	승하강식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1,277	1,219	13	2	1	42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고장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76호, 시행 2023. 1. 26.] 제7조,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04호, 시행 2023. 1. 30.] 제12조, 제13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시행 2023. 1. 1.] 제2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부서에서는 대체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하여 항상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0000. 0. 00. ~ 0. 00.) 중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20개소(2020년 1개소, 2021년 5개소, 2022년 14개소)의 고장 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즉시 고장사실 전파 및 대체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확인한 결과 ○○000호의 경우 2021. 2. 6. 소방용수시설 점검 중 소화전 스피들이 불량하여 출수가 불가능함을 발견한 후 대체소화전을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2022. 4. 1. 수리완료되어 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소화전이 고장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용수조사부를 사용가능으로 작성하는 등 4개소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6호, 시행 2023. 1. 26.]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법률 제18522호, 시행 2022. 12. 1.] 제32조 제6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와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16의 3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516의 4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재구성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04호, 시행 2023. 1. 30.] 제12조, 제13조 및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시행 2023. 1. 1.] 제2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0000. 0. 00. ~ 0. 00.)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1,219개소, 지하식 소화전 13개소, 승하강식 소화전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3개소에 소방용수시설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음에도 양호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시 소화전 몸통이 절단되어 사용 불가능함을 인지하여 소화전 고장발생보고 및 대체소화전을 관내 119안전센터에 안내하였으나, 0000년 0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0000. 0. 0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시 제수변 개폐 불량으로 사용 불가능함을 인지하여 소화전 고장발생보고 및 대체소화전을 관내 119안전센터에 안내하였으나,

0000년 00월에 소화전이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00년 00월 소방용수 조사부에 사용 가능으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는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호와 ○○○○○호 소화전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하던 중 ○○○○○호의 경우 0000. 0. 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시 소화전 스펀들 불량으로 사용 불가함을 인지하여 소화전 고장발생보고 및 대체소화전을 관내 119안전센터에 안내하였으나, 0000년 0월에 소화전이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00년 0월부터 0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사용 가능으로 작성하였고, ○○○○○호의 경우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시 소화전 스펀들 불량으로 사용 불가함을 인지하여 소화전 고장발생보고 및 대체소화전을 관내 119안전센터에 안내하였으나, 0000년 0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담당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고장 소화전에 대한 소방용수조사부를 수개월 간 사용가능으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한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담당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소방○ ○○○과 고장 소화전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를 사용가능으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한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및 소화용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용수시설을 ○○○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